

1. 개정이유

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개정(법률 제17723호, 2020. 12.22. 공포, 2021. 6.23 시행)(법률 제18025호, 2021. 4.13. 공포, 2021. 6.23 시행)으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대해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진흥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내용 (안 제15조의7 신설)
 -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,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함
 - 정보망 구축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고, 정보망 구축·운영을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
- 나. 정원진흥사업 지원신청 (안 제15조의8)
 - 법률체계에 맞춰 종전 조문제목을 ‘정원산업 지원신청 서류’에서 ‘정원진흥사업의 지원신청 서류’로 변경하고,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합의 전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1.4월 ~ 5월중)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8조의3제1항”을 “법 제18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6 중 “법 제18조의14”를 “법 제18조의18”로, “한국수목원관리원”을 “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7,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를 각각 제15조의8, 제15조의9 및 제15조의11로 하고, 제1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7(정원의 진흥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내용 등) ①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원의 조성·등록 및 운영·관리 현황
2. 정원산업의 시장 실태조사
3. 정원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
4.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
5. 국내외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. 정기조사 : 5년마다 실시하되,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전 연도에 실시

2. 수시조사 :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

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른 정보망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.

1. 정원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
2. 정원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
3. 정원 치유·관광에 관한 정보 및 예약 신청·관리
4.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원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의8(중전의 제15조의7)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8조의9제2항”을 “법 제18조의8제3항”으로, “정원산업”을 “정원진흥사업”으로,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산림청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8(중전의 제15조의7)의 제목 “(정원산업 지원신청 서류)”를 “(정원진흥사업의 지원신청 서류)”로 한다.

제15조의9(중전의 제15조의8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8조의11 제1항”을 “법 제18조의15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11(중전의 제15조의9) 중 “법 제18조의11제3항”을 “법 제18조의15제3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의2서식 중 “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제1항”을 “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의3서식 중 “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제1항”을 “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의7서식 앞쪽 중 “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5제2항”을 “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제5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8호의9서식 중 “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11제2항”을 “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15제2항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시행규칙 제15조의8제1항”을 “시행규칙 제15조의9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의10서식 중 “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18조의11제1항”을 “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15제1항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시행규칙 제15조의8제3항”을 “시행규칙 제15조의9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의3(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) ① <u>법 제18조의3제1항</u> 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~ 4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15조의3(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) ① <u>법 제18조의3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의6(정원의 품질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) 법 제18조의7제3항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”란 <u>법 제18조의14</u> 에 따른 <u>한국수목원관리원</u> 을 말한다. <u><신 설></u>	제15조의6(정원의 품질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8조의18</u> ----- ----- <u>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</u> ----- -. 제15조의7(정원의 진흥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내용 등) ① <u>법 제18조의9제1항</u> 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정원의 조성·등록 및 운영·

관리 현황

- 정원산업의 시장 실태조사
 - 정원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
 -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
 - 국내외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- 정기조사 : 5년마다 실시하되,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전 연도에 실시
 - 수시조사 :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
 -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5조의7(정원산업 지원신청 서류)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에 따른 <u>정원산업</u>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(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에게 제출해야 한다.	④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른 정보망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. 1. 정원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2. 정원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 3. 정원 치유·관광에 관한 정보 및 예약 신청·관리 4.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원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제15조의8(정원진흥사업의 지원신청 서류) 법 제18조의8제3항----- ----- 정원진흥사업 ----- ----- <u>산림청장</u>----- ---
제15조의8(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) ①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(이하 “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2. (생략) ②·③ (생략) 제15조의9(교육기관의 지정표시) 법 제18조의11제3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.	제15조의9(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) ①법 제18조의15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5조의11(교육기관의 지정표시) 법 제18조의15제3항----- ----- -----

정원진흥사업 지원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3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

기관 현황	기관명		대표자 성명
	설립일		사업자등록번호
	소재지	전화번호(FAX)	
	주 사업범위		

신청내용	신청액	지원 용자
	담당자 전화번호(FAX)	
	신청액 사용용도	

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장 (관인)

산 립 청 장 귀하

첨부서류	사업계획서(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)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처리절차

